



전기사업법

[시행 2026. 1. 2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산업통상부 (전력산업정책과) 044-203-3888

산업통상부 (전력시장과) 044-203-3916

산업통상부 (신산업분산에너지과) 044-203-3922

산업통상부 (전력계통혁신과) 044-203-3937

산업통상부 (에너지안전과) 044-203-3982

산업통상부 (전기위원회) 044-203-4598

제1장 총칙 <개정 2009. 5. 21.>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 6. 12.>

부칙 <제21065호, 2025. 10. 1.>(정부조직법)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(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)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가. 제19조제4항, 제23조,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

나. 제12조제2항, 제19조제3항,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(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

다.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(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)

2. 생략

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267>까지 생략

<268>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2호의12 · 제18호 · 제21호, 제7조제1항 후단, 같은 조 제6항, 제7조의2제2항 · 제5항,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,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1조제4항, 제16조의2제3항제6호, 같은 조 제8항, 제16조의3제1항, 제16조의5제6항, 제17조, 제18조제1항 · 제2항, 제20조의2, 제40조제1항제3호, 제45조제3항 전단, 제59조제2항, 제61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 전단, 같은 조 제5항 · 제6항, 제63조, 제64조제2항, 제65조의2 및 제93조제1항 중 "산업통상자원부령"을 각각 "기후에너지환경부령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· 제2항 · 제4항,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7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, 제7조의2제1항 · 제2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, 제7조의3제6항, 제9조제2항 본문,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1조제4항, 제12조제1항제4호의2 · 제7호 · 제8호 · 제10호 · 제10호의2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

은 항 제5호, 제15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, 제16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, 제16조의2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4항, 같은 조 제5항 전단, 같은 조 제6항, 제16조의3제3항 전단,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, 제18조제3항, 제19조제2항, 제25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본문 · 단서, 같은 조 제4항, 같은 조 제5항 전단, 같은 조 제7항 · 제8항, 제25조의2제1항, 제26조 전단, 제27조, 제27조의2제1항 · 제3항, 같은 조 제4항 전단, 같은 조 제5항, 제28조 전단,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0조, 제31조의2제2항 · 제3항, 제33조제2항 전단 · 후단, 제34조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 전단, 같은 조 제4항 본문, 제40조제2항, 제43조제2항 · 제3항, 제43조의2제2항 · 제3항, 제45조제3항 전단 · 후단, 제46조제1항 · 제2항, 제47조제1항, 제47조의2제2항제4호, 제50조제2항 · 제3항, 제51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, 제52조제1항 · 제2항, 제53조제3항, 제56조제1항제11호의2 · 제15호, 같은 조 제2항, 제61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 · 제4항, 제65조의2, 제67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3항 본문, 제69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, 같은 조 제3항 · 제4항,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제72조의2제2항 단서, 같은 조 제3항 · 제4항, 제92조제3항, 제94조,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96조의5제2항, 제98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 · 제5항, 제99조제2호 및 제108조제3항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"으로 한다.

제47조의2제1항 및 제53조제1항 중 "산업통상자원부"를 각각 "기후에너지환경부"로 한다.

제50조제3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기획예산처장관"으로 한다.

<269>부터 <626>까지 생략

제8조 생략